

2020년도 제26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0. 26.(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24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467건(안건번호 제2020-138404호~제2020-13937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38404호~138414호는 블로그 및 카페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38415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39283호는 게시물 내 불법복제물을 게시자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사안으로,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42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63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4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6쪽의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 11쪽의 밴드명 및 저작물명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한 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회의록 전문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상이 없음.
- C 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안에 동의함.
- D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심의대상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밴드명, 민원인

이 신고한 저작물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CJ엔터테인먼트', 'TCO(주)더콘텐츠온', '넷플릭스', '미국 AMC', '미국 Showtime', '영국 Sky One', '이십세기폭스', '일본 NHK E 테레', '일본 TV 아사히', '중국 텐센트TV'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46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0-138404호~139373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8404호~138414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 및 카페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 ‘★★★★★★★★★★★★★★★★★★★★★★★★★★★
 ★★★★★★★★★★★★★★★★★★★★★★★★’, ‘☀☀☀☀☀☀☀☀☀☀’, ‘⊙⊙⊙
 ⊙⊙⊙⊙’, ‘□□□□’, ‘♠♠♠♠♠♠♠♠♠♠♠♠’, ‘♡♡♡♡♡♡♡♡♡♡
 ♡)’의 한 화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그 중 안전번호 제2020-138410호는 2020. 10. 21. 기준으로 비공개
 게시물로 전환되어 있었음.

(안전번호 제2020-138410호 게시물을 제시하면서)2020. 10. 26. 심의
 일 현재 여전히 비공개 게시물인 것으로 확인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38404호~13841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C 위원: 블로거들이 일단 불법복제물을 게시하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일정 경향성을 가지고 비공개하는 것으로 보이지
 는 않음.
- D 위원: 비공개된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경우와는 다른 것
 으로 보임. 이 역시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A 위원: 동의함.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 B 위원: 마찬가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저작권법 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38404호~13841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38415호는 자신이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어문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2020. 10. 21. 기준 이미 심의대상 게시물은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안전번호 제2020-138415호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심의일 현재에도 여전히 이미 삭제 또는 게시중단된 상태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3841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D 위원: 해당 게시물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것을 확인하였고,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게시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당 저작물이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경우에 불과하므로 복제·전송자에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B 위원: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하는 것에 대해 찬성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38415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38416호~139282호 및 안전번호 제2020-139284호~139373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출판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디바'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38444호는 우리나라 영화 '디바'를 밴드 '◇◇◇◇◇◇◇◇◇◇◇◇◇◇◇◇'에

서 mp4 파일로 제공 중인 사안임. 해당 밴드의 회원수는 332명이며, 공개형 밴드임.

(영화 '인셉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8645호는 영화 '인셉션'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40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2010. 7. 21. 개봉하였고, 2020. 1. 29., 2020. 8. 12. 각각 재개봉하였음.

(방송 '나르코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9108호는 2015. 8. 28. 넷플릭스에 공개된 미국드라마 '나르코스 시즌1'의 한 화 전체분량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14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방송 '고양이를 부탁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9140호는 EBS1에서 2020. 4. 3. ~ 2020. 8. 14. 방영한 시사/교양 프로그램 '고양이를 부탁해 시즌 5'의 한 화 전체분량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29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프로그램은 EBS 홈페이지에서 광고를 시청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38416호~139282호 및 안건번호 제2020-139284호~13937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C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B 위원: 동의함.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D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38416호~139282호 및 안전번호 제2020-139284호~139373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3928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심의대상 게시물 내 불법복제물의 전송이 중단된 사안임.
블로그에 중국 드라마의 2회차 전체분량을 무단 제공한 사실이 2020. 9. 6.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나, 2020. 10. 21. 기준으로 불법복제물이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불법복제물이 게시되어 있던 부분은 출연 배우 등의 사진으로 대체되어 있음. 해당 저작물은 2020. 10. 13.부터 국내 OTT인 웨이브(wavve)에서 독점 제공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139283호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되던 불법복제물은 게시자가 자의로 삭제하여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음.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이 현재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검토하였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3928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B 위원: 앞의 안전인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사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먼저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상태가 아니며 현재 이용가능함. 다만 게시물 본문에서 불법복제하여 전송하고 있던 영상물 부분이 사라졌고,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배우 사진 등으로 대체되었음.
- B 위원: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사안과 자의적으로 삭제한 사안의 구분이 가능한지?
- 오진해 전문위원: 앞서 확인한 안전과 같이 OSP가 삭제 또는 전송중단한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문구가 제시되고 있음.
- A 위원: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자발적으로 시정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에 의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이었는지, 유사 위반 행위를 반복하였는지가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C 위원: 해당 블로그의 전체적인 취지는 어떠한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블로그의 전체 게시물 목록과 해당 게시판 게시물을 제시하면서)드라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블로그이고, 다른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고 있지는 않음.
- B 위원: 게시물 내 불법복제물을 게시자가 자의적으로 삭제하여 경고의 필요성도 약하다는 점에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다만 과거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도 주의 등의 조치를 줄 수 없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음. 이 부분은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
- A 위원: 해당 안전은 앞서 언급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의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삭제하였으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C 위원: 침해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경고의 시정조치를 할 것인지 경고도 불필요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스스로 침해를 중단한 점, 블로그 성격 및 이웃 등 규모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삭제, 게시중단, 경고의 시정권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 D 위원: 해당 블로그를 살펴보았을 때 불법복제물은 게시자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임. 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39283호는 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39283호는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0-138404호~139282호 및 안전번호 제2020-139284호~13937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26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6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1. 2.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